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 10월 8일 법 시행... '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배상 신청 접수
-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

□ 정부는 2026년 10월 8일(목)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되며,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배상 심의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목)부터 2027년 4월 7일(수)까지 6개월간 받는다. 배상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 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은 온라인(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콜센터 1833-9085),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

- 특히,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자료, 진료 기록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은 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라면서 “피해자와 유족분들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책임자	과 장 신용현	(044-200-6080)
		담당자	서기관 권준제 사무관 최은옥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책임자	과 장 손삼기	(044-201-6810)
		담당자	서기관 박금채	(044-201-674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 책임 배상체제로 전환됩니다!

기존과 달리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족
(문의 1833-9085)

신청기간 2026년 10월 8일 ~ 2027년 4월 7일

신청방법	구분	방법
온라인		[피해지원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접속 → 배상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별첨서류 첨부하여 제출 ☆ 손해배상 신청은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접수·안내		세종 다솜1로 36 501호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오프라인	서울 중구 소월로 8, 제분빌딩 9층 가습기살균제 소통공간
안내처		※ 온라인 접수 안내만 가능
	이메일	hdsupport@korea.kr 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우편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 생년월일 끝자리(홀짝)를 기준으로 2부제로 진행
(2026년 10월 23일까지(잠정))

- 짝수일 신청 가능: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2, 4, 6, 8, 0)
- 홀수일 신청 가능: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1, 3, 5, 7, 9)

 국무조정실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

 기후에너지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